

충청북도지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전문위원 남범우

충청북도지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21년 1월 11일
- 회부일자 : 2021년 1월 12일

3. 개정이유

- 「충청북도지편찬위원회 조례」는 2001년 전부개정 된 이후, 2006년과 2011년에 일부개정되었으나, 현재 실정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음.
- 충청북도지편찬위원회의 구성, 기능, 상임위원, 위원 해촉, 간사 구성 등의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충청북도지 편찬을 도모하려는 것임.

4. 주요내용

- 위원회 부위원장 변경(안 제2조)
  - 기획관리실장→ 위원 중에 호선
- 도지편찬 관련 위원회의 역할(편찬수행→ 편찬사항 심의) 변경(안 제3조)

- 상임위원 선정 사항 변경(안 제5조)
- 위원 해촉 사항 변경(안 제7조)
- 소위원회 명칭을 분과위원회로 변경(안 제9조)

## 5. 검토의견

금번 개정조례안은 2011년에 일부개정 이후 현재 업무추진시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므로, 충청북도지편찬위원회의 구성, 기능, 상임위원, 위원 해촉, 간사 구성 등의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충청북도지 편찬을 도모하려는 것임.

-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  - 안 제2조에서는 위원회 구성시 부위원장을 기획관리실장에서 위원중에 호선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,
  - 안 제9조에서는 소위원회 명칭을 분과위원회로 변경 하였으며,
  - 그밖에 안 제3조, 제5조, 제7조 등에서는 미비점을 보완하고 각종 용어를 정비하였음.
- 이 개정조례안은 현재 부서에서 도지편찬 업무추진시 적합하지 않은 부분을 보완하고 용어로 정비하는 것으로 이에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음.

붙임: 충청북도지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